#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70

발의연월일: 2024. 9. 6.

발 의 자:김현정・민병덕・한창민

정진욱 • 신장식 • 강준현

이수진 • 박정현 • 김남근

양문석 · 남인순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금융위원회가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금융산업정책 기능이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압도하여 엄정한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국내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제고하고,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국제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하여 경제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제4호, 제27조제1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현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제4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국제금융"을 "금융"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 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금융감독위원회 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로 승계되는 사무를 제외한 업무(이하"기

획재정부승계사무"라 한다)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승계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금융위원회의 사무와 관련된 총리령은 기획재 정부령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획재정부승계사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금융위원회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행위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
직 등) ① (생 략)	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	2
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	
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	
고는 설치할 수 없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4.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u>관한 법률」</u> 제3조에 따른 <u>금</u>	<u>관한 법률」</u> 금
<u>융위원회</u>	융감독위원회 및 제47조에 따
	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27조(기획재정부) ① 기획재정	제27조(기획재정부) ①
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	
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	
·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	
·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	
관세· <u>국제금융</u> , 공공기관 관	<u></u>
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	

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	
를 관장한다.	<b>.</b>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